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79조제4호의2).
- 누구든지 제29조의3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3).

II. 검토의견

1.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시중 유통·판매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필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79조제4호의2)

안 제29조의3제4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또한, 안 제79조제4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수할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안 제29조의3제4항이 규정한 “시중에 유통·판매”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동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독점적으로 제작·운영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성능시험대행자 등 사고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비를 통해 사고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임.

그러나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자동차 소유자 등 사고기록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고기록추출장비를 판매하면 되는 것인지, 불특정다수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등 “시중에 유통·판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단종되어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 차종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시중에 유통·판매하여야 하는지, 가격·판매지역·판매형태 등 어느 수준의 접근성을 갖추어야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매자 등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둘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의 경우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

고 있음.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법규의 위임도 허용되나,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¹⁾

그러나 개정안이 규정한 “시중에 유통·판매”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개정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79조제4호의2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부합는 규정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안 제79조제4호의2의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음.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79조제4호의2에 대하여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을 고려할 때 사고기록추출장비

1)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유통·판매의 의무화는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도 사고원인의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면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사고기록추출장비” 및 “시중에 유통·판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 정 의 건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 략) ④ <u>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기록장치에 저장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 비(이하 “사고기록추 출장비”라 한다)가 시 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 략) ④ <u>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 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⑤ ~ ⑥ (생 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⑤ ~ ⑥ (생 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 19. (생략)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4의2.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u> <u>4의3. (생략)</u> 5. ~ 19. (생략)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삭제></u> <u>4의2. (생략)</u> 5. ~ 19. (생략)
--	---	---

2. 의무 규정의 명확화 필요(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3)

안 제29조의3제6항은 누구든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또한, 안 제79조제4호의3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안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외의 자가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 뿐만 아니라, 민간 성능시험대행자 등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이를 분석한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이 규정한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만이 제공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정보²⁾인바, 안 제29조의3제6항은 의무주체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제한하여 인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음.

< 수 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⑤ (생략) ⑥ 누구든지 <u>제3항제1 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 은 항 제2호의 결과보 고서를 거짓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 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⑤ (생략) ⑥ 누구든지 <u>사고기록 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 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 과를 거짓으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 19. (생략)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4의2. (생략)</u> <u>4의3.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u> 5. ~ 19. (생략)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삭제></u> <u>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u> 5. ~ 19. (생략)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